#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6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박준태

김소희 · 김기현 · 박성훈

엄태영 · 김정재 · 김성원

윤재옥 • 권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 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 · 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3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활용이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 인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함.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 중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 관리(안 제1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저장소의 설치·운영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저장소 설치·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4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 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 공개(안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하여 공개하되,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안 제16조)

국가연구데이터는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7조)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 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함.

### 아. 선도기관(안 제18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9조)

바이오, 소재 등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 · 보존하고 해

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차. 분쟁조정(안 제20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한 근 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 구개발과제를 말한다.
  - 3. "국가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서 국가연구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2.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
  - 4.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7. 선도기관, 전문분야별 전문센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하여 제2항에 따른 보 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 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조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2.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 3.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의 수요 등 현황 파악
  -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단체 등과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정보 교환 방안
  - 2. 국가연구데이터의 국제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 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공동 사업 등의 지원
-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지원
- 5.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

-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 자가 생성한 국가연구데이터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소는 제17조 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제2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을 제17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 ②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거나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 랫폼에 등록·공개된 데이터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 가연구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가 무료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데이 터를 활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연구 개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③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국가연구데이터를 분야. 유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선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 4.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 ② 선도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국가연 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 보존 · 폐기에 관한 사항
- 2.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4. 국가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련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를 점검·공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선도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도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⑥ 그 밖에 선도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분야별 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해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하"분야별 전문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등록·보존·제공·폐기에 관한 사항
  - 2.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5.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분석도구 등의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 전문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 2.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야별 전문센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제1항 및 제5항의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그 밖에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 제20조(분쟁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 를 활용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면책)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에 관하여 해당 연구개 발기관과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이를 활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